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1012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42662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101206 판결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 2021. 12. 21.

판결 선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7.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2,546,4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546,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11837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15.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주식회사 E에게 18,475,412원 및 그 중 5,464,815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2. 18. D에게 송달되어 2016. 3. 4.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E는 2020. 3. 31.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4. 6.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의 부친 F는 2017. 7. 17. 사망하였고, F의 재산을 F의 배우자인 피고가 3/9지분, 자녀들인 D, G, H이 각 2/9지분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와 D을 비롯한 자녀들은 같은 날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24.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9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고 한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다른 채권자인 I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3081호로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D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0. 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8나59212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여 피고와 I 유한회사는 2019. 3.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I 유한회사에게 총 7,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로 분할하여 2019. 5. 31.부터 2020. 2. 29.까지 매월 말일에 7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I 유한회사에게 7,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I 유한회사에게 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고 할 것인데, 가액의 회복을 마친 부분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상속지분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가액의 회복을 마친 위 7,000,000원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액에서 위 가액의 회복을 마친 7,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상속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 갑 9호증 내지 갑 1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부산 서구 J 대 151.8㎡(이하 'J 토지'라고 한다) 중 18,950/96,200지분, F 지분)과 J 토지 중 8,150/96,200지분(K 지분),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부산 서구 J 지상 내제조표 L 건물(이하 'L 건물'이라고 한다) 중 1/2지분, F 지분)과 L 건물 중 1/2지분(K 지분),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M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7.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 채무자를 K, F,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N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 J 토지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에 가까운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2,5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4,376,000원인 사실, L 건물의 201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57,400,000원이고,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80,500,000원인 사실, M 건물의 201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23,300,000원이고,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31,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2000. 5. 15. 부산 서구 ○ 대 220㎡(이하 'O 토지'라고 한다) 중 3,700/135,000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1. 24.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 토지 중 F 지분인 6,470/135,0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7. 31. O 토지 중 10,170/135,000지분에 관하여 P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P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상속지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 1. 기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30,852,857원($=4,376,000\text{원} \times 151.8\text{m}^2 \times 18,950/96,200\text{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40,250,000원($=80,500,000\text{원} \times 1/2$),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31,000,000원이고, 2018. 7. 31. 당시의 O 토지 중 10,170/135,000지분의 가액은 65,000,000원이어서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O 토지 중 F의 6,470/135,000지분)의 그 당시의 가액은 41,352,015원($=65,000,000\text{원} \times 6,470 \div 10,170$)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위 각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상속지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은

54,101,082원 $\{=243,454,872\text{원}(=130,852,857\text{원}+40,250,000\text{원}+31,000,000\text{원}+41,352,015\text{원}) \times 2/9\}$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중 이 사건 상속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먼저 공동저당물의 각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에 가까운 2017. 1. 1. 기준 J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2,500,000원이고, 2017. 1. 1. 기준 L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57,400,000원, M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23,3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동저당물인 J 토지 중 27,100($=18,950+8,150$)/96,200지분, L 건물, M 건물의 사해행위 당시의 가액은 187,606,952원 $\{=106,906,952\text{원}(=2,500,000\text{원} \times 151.8\text{m}^2 \times 27,100/96,200)+57,400,000\text{원}+23,300,000\text{원}\}$ 할 것이다.

나아가 공동저당물 중 이 사건 상속지분의 사해행위 당시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당시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74,755,968원($=2,500,000\text{원} \times 151.8\text{m}^2 \times 18,950/96,200$),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28,700,000원($=57,400,000\text{원}\div 2$),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23,3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상속지분의 사해행위 당시의 가액은 $28,167,992\text{원}\{=126,755,968\text{원}(=74,755,968\text{원}+28,700,000\text{원}+23,300,000\text{원})\times 2/9\}$ 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동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 40,000,000원¹⁾ 중 이 사건 상속지분이 부담하는 금액은

$5,999,782\text{원}(=40,000,000\text{원}\times 28,167,992\text{원}/187,606,952\text{원})$ 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액인 54,101,082원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이 사건 상속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인 5,999,782원을 공제한 금액은 $48,101,300\text{원}(=54,101,082\text{원}-5,999,782\text{원})$ 이고, 한편 I 유한회사가 선행 사해행위 소송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 회복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미 가액의 회복을 마친 7,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상속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41,101,300\text{원}(=48,101,300\text{원}-7,000,000\text{원})$ 이 된다.

(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주식회사 E가 "D은 주식회사 E에게 18,475,412원 및 그 중 5,464,815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6. 2. 18. D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2. 2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2,845,766\text{원}\{=18,475,412\text{원}+2,690,485\text{원}(=5,464,815\text{원}\times 0.15\times 1,198\text{일}2)/365\text{일}\}+1,679,869\text{원}(=3)/365\text{일}\}$ 이 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상속지분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공동담보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546,4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2,546,43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범

별지

1) 이 사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상속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2016. 2. 19.부터 2019. 5. 31.까지

3) 2019. 6. 1.부터 2021. 12. 21.까지